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의 정원 1명(6급 1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정원 7명(6급 3명, 7급 2명, 8급 2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13. ~ 11.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793”를 “788”으로 하고, 일반직 계 “784”를 “77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55”을 “750”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029”을 “1,021”로 하고, 일반직 계 “1,029”을 “1,02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027”을 “1,019”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정원 8명(6급 4명, 7급 2명, 8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93</u>	<u>788</u>	-5
•	•	•	
•	•	•	
일반직 계	<u>784</u>	<u>779</u>	-5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55</u>	<u>750</u>	-5
•	•	•	

[별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29</u>	<u>1,021</u>	-8
일반직 계	<u>1,029</u>	<u>1,021</u>	-8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027</u>	<u>1,019</u>	-8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4